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507813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6나662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5078133 판결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주식회사 D

변론 종결2016. 8. 30.

판결 선고2016. 9. 2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124,990원과 그 중 182,769,78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188,124,990원과 그 중 182,769,780원에 대하여 2015. 4. 30. 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88,124,990원과 그 중 182,769,78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이 2014. 12. 29.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에게 2014. 12. 29. 특허청 접수번호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고 B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주채무자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88,124,990원(=대위변제금 182,769,780원+법적 절차비용 5,355,21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82,769,78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4.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5.

2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B은 2014. 5. 13.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12. 29. 자신의 동생 F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권리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 10호증의 1, 2, 11호증, 부천시 소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A간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는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 할 수 있다. 피고 A는 자신 소유의 법인 소재지 건물에 관하여 2014. 2. 28. 이후 여러 차례 가압류를 당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부동산 및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사전구상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하여 있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1.항 기재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B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및 특허권 양도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720,664,820원의 이 사건 부동산(감정가 715,664,820원, G에 대한 감정축탁결과)과 특허권(5,000,000원, 다툼 없는 사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비롯한 금융권 채무 약 1,995,306,990원(=원고에 대한 구상금 188,124,990원+우리은행 보증채무 124,000,000원+ 하나은행 보증채무 1,286,988,000원+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81,437,000원+ 현대캐피탈 보증채무 14,757,000원 + 하나은행 근저당채무 3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10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피고 C,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위 각 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 C, 주식회사 D 역시 위 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① 이 사건 부동산 및 특허권의 매각은 그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매각대금이 적절하고 실제로 지급되었으며,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 C, 주식회사 D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의 매각대금이 피고 B에게 실제로 지급되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은 피고 B과 모자, 형제관계로서 피고 B의 재산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사이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부동산 및 특허권의 매각시점이 피고 A가 부동산가압류 처분을 당하던 시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C, 주식회사 D은 부동산 및 특허권 양도계약 당시 피고 A, 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사해의사의 추정을 깨트리기에 부족하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8. 12.부터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 B, C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7. 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갑 10호증의 1, 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715,664,820원에서 위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을 뺀 잔액(355,664,820원)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구상금채권 금액을 상회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188,124,990원과 그 중 182,769,78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②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88,124,990원과 그 중 182,769,78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①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②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에게 2014. 12. 29. 특허청 접수번호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이의진

별지